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6~'20)

2016. 12.

서울특별시(중랑구)

I. 기관현황

F4 지방자치단체

- (정원) 1,231명 ※ '15년말 기준
- (예산) 473,890억원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21.6%, 재정자주도 49.08%

F5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중량구시설 관리공단	2003	100%	200명	127	주차,체육관, 도서관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F6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F4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5,061	15,394
통합부채	167	176
1. 유동부채	76	41
· 이자부금융부채	0	0
· 기타금융부채	33	36
· 비금융부채	43	5
2. 장기차입부채 (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91	135
· 기타금융부채		
· 비금융부채	91	135
통합자본	14,893	15,218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지난해에 비해 33,369백만원의 자산이 증가함. 이는 주로 유동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임. 유동자산의 총액은 101,456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0,934백만원이 증가함. 이는 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임.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1,438,034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2,435백만원이 증가함. 이는 주로 주민편의설의 증가에 의한 것임.

지난해에 비해 824백만원의 부채가 증가함. 이는 주로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임. 유동부채의 총액은 4,156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447백만원이 감소함. 이는 주로 단기예수보관금의 감소에 의한 것임. 비유동성 부채의 총액은 13,454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4,271백만원이 증가함. 이는 주로 장기예수보증금의 증가에 의한 것임.

F5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 관	내부거래 내 용
중랑구청	자산-투자자산-장 기투자증권-출자금	2.5	중랑구시설관 리공단	출자금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출자금**

F6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5,058	15,392
통합부채	167	176
1. 유동부채	76	41
· 이자부금융부채	0	0
· 기타금융부채	33	36
· 비금융부채	43	5
2. 장기차입부채 (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91	135
· 기타금융부채		
· 비금융부채	91	135
통합자본	14,891	15,216

F7 우발부채세부내역

-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없음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없음
-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중랑구	2012년	0.1	부당이득금반환	0	해당사항 없음	0
중랑구	2013년	19.92	부당이득금반환 외 3건	0	해당사항 없음	0
중랑구	2014년	12.6	손해배상 외 10건	0	해당사항 없음	0
중랑구	2015년	19.7	부당이득금반환 외 16건	0	해당사항 없음	0

F8 부채상세분석

-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 해당없음
-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 해당없음
-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 해당없음
-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 해당없음
-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 기관	
합계	5,445	5,322	123		
①경상수입	1,095	985	110		
· 지방세	603	603	-		
· 세외수입	382	382	-		
· 매출액 등	110	-	110		
②이전수입	3,552	3,552	-		
③자본수입	223	221	2		
④기타	575	564	11		

F9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전반적으로 복식부기 도입 초기단계이므로 자산·비용등 재무제표구성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관리과목의 특성파악 및 관심도가 부족한 현실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관심을 통해 회계처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됨.

② 지방공사·공단

F10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 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중랑구 (기초자치단체)	자산-유동자산-기타유 동자산-일반미수금	1,999,262,080	서울특별시 (본청)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중랑구 (기초자치단체)	부채-유동부채-기타유 동부채-일반미지급금	1,523,080,780	서울특별시 (본청)	자치구 징수교 부금 미지급액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F4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79.5	176.1	3.4		179.5	176.1	3.4	
유동	이자부금융	0	0	0	0	0	0	
	기타금융	36.1	36.1	0	36.1	36.1	0	
	비금융	8.5	5.4	3.1	8.5	5.4	3.1	
비유동	이자부금융	0	0	0	0	0	0	
	기타금융	0	0	0	0	0	0	
	비금융	134.9	134.6	0.3	134.9	134.6	0.3	

- 내부거래 :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출자금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79.5	176.1	3.4		179.5	176.1	3.4	
유동	이자부금융	0	0	0	0	0	0	
	기타금융	36.1	36.1	0	36.1	36.1	0	
	비금융	8.5	5.4	3.1	8.5	5.4	3.1	
비유동	이자부금융	0	0	0	0	0	0	
	기타금융	0	0	0	0	0	0	
	비금융	134.9	134.6	0.3	134.9	134.6	0.3	

※ 추정방법 설명

-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4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4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계	0	0	0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0	0	0		
계약상 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0		
소송관련	0	0	0	0	0	0	0	0		

※ 추정방법 설명

- 소송관련 부채계상액은 현재 없으며, 향후 발생가능성 추정치 미반영

F5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우발부채는 모두 소송관련으로 현 시점에서 향후 5년간의 현실화 예상액 추정이 어려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현재 투자사업 및 향후 5년간 채무 및 선수금관리 및 BTL 관련 장기 미지급금 등 관련 부채 계획 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중점관리 대상 부채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F6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0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 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소송관련	0	0	0	0	0	0

- 우발부채 중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내용 계획이 향후 5년간 없음.

- 부채에 계상된 진행 소송은 없으며, 발생가능성 예측이 불가함.

나. 자치단체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0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 약 상 약 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소송관련	0	0	0	0	0	0

○ 우발부채 중 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 지원 협약 내용 계획이 향후 5년간 없음.

○ 부채에 계상된 진행 소송은 없으며, 발생가능성 예측이 불가함.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0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 약 상 약 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소송관련	0	0	0	0	0	0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붙임 2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